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8 발의연월일: 2024. 6. 7.

발 의 자:박 정·문금주·유동수

김현정 • 안규백 • 강유정

어기구・송옥주・민병덕

김병기 · 김영환 · 소병후

김남근 · 염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공전선로 설치사업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수 있도록 신설하되,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음.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비용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위한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국가의 국민안전보장 책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	법률 제18280호 전기사업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u><</u> 삭 제>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u> 가진다.</u>			